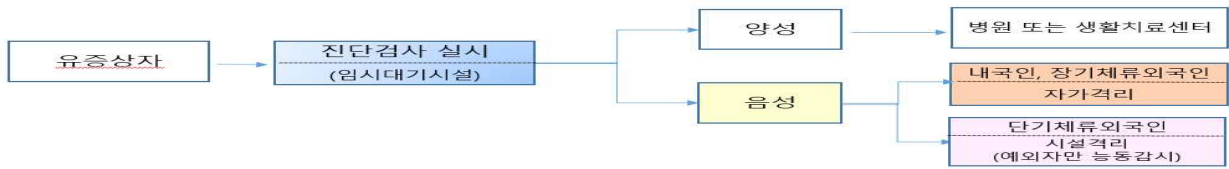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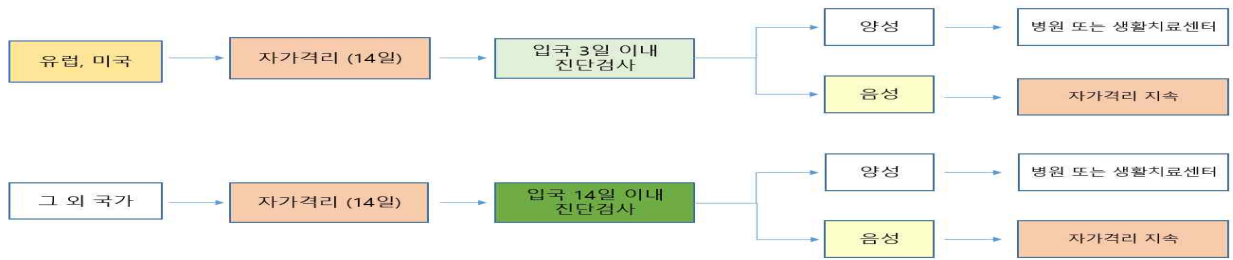
### III. 검역대응 절차

#### □ 유증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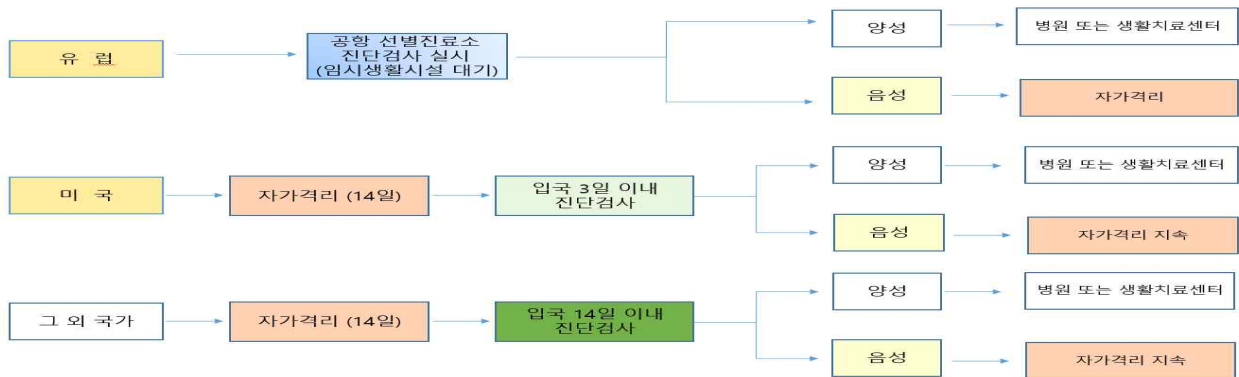


#### □ 무증상자

##### ① 내국인



##### ② 장기체류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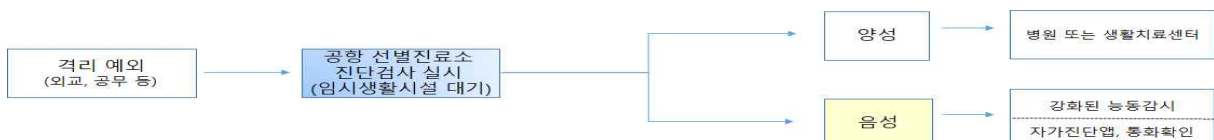


##### ③ 단기체류 외국인



##### ④ 격리 면제 대상자

\* A1(외교), A2(공무)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 ① 검역조사

- (공통사항)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후 특별입국절차 수행
  - 검역관은 감시기간(14일) 내 국내 입국자 전수 대상 발열확인(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서식 1] 확인, 격리주의 안내문 배부[부록 1]
  - ※ 선박의 경우, 선의(船醫)가 있어도 입국자 전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확인
  - \*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 (특별입국절차) 입국 전용 심사대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및 특별검역신고서[서식 2] 확인 후 특별입국절차 진행
  - \* 선박의 경우 감시기간 상관없이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적용
  -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입국자의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직장명(학교명) 등 작성 확인
  - (관련 앱 설치)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특별입국절차 완료에 따른 조치) 연락처 및 입국자별 관련 앱 설치 여부 확인 후 다음의 조치 수행
    - 연락처 및 앱 설치 확인 시 → 검역확인증 발급[서식 3]
    - 시설격리 미동의,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서식 4] 작성 후 법무부로 송부
    - \* (법무부) 앱 미설치자 및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지자체로 정보 공유
  - (일일상황 보고) 해당 검역소는 특별입국 일일상황 및 앱 미설치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으로 보고

## ②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유증상자 검역조사)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격리 면제 대상자 모두 포함)
  - 서류 간소화(유증상자 검역조사서 생략, 필요시 역학조사서 간소화)
  -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검역대상자는 마스크 착용
    -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해열제 복용여부 확인)
    - \*\* 항공기(선박) 입항 전 발열 또는 호흡기질환 유증상자 발생 신고 시, 항공사(해운대리점)와 협의하여 의심환자 선(先)하기 조치하여 검역조사 수행
- 고열(38℃초과) 지속,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 등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
  - \* 관할 시도 병상배정 담당자와 협의 필요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참고자료] (대한의사협회)

구분	분류기준
경증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고위험군의 기준]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제8판)

### [고위험군]

- 연령 :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외(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실)로 함께 이동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외\*) 기초역학조사[서식 5] 후 진단검사 실시
  -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 격리관찰 수행
    - \* 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외(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는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국립검역소 역학조사 인력 활용
    - ※ 역학조사 시 개인보호구(Level D) 착용
    - ※ 선박의 경우, 대상자 증상 상태를 판단하여 미하선 시 선내격리 가능

### 3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1) 유럽발 입국자

#####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내국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귀가 후 3일 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외국인)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생활 시설에서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임시 대기
  - \* 09:00~19:00에는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시기간(14일) 동안 시설격리 대상이며,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임
  -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입소 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삭제 후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 2) 미국발 입국자

#####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귀가 후 3일 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감시기간(14일) 동안 시설격리 대상임을 안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후(시설 입소시 동 앱 삭제 후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09:00~19:00에는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 \*\* 공항에서 받은 격리통지서는 시설에서 ‘시설격리’로 수정
  - ※ 격리통지서는 입국일로부터 지자체에서 별도 격리통지서 발부 시까지 유효

### 3) 그 외 국가발 입국자

####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자가격리 중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14일 내 진단검사 실시
  - ※ 격리통지서는 입국일로부터 지자체에서 별도 격리통지서 발부 시까지 유효
-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감시기간(14일) 동안 시설격리 대상임을 안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후(시설 입소시 동 앱 삭제 후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공항에서 받은 격리통지서를 시설에서 ‘시설격리’로 수정
  - ※ 시설격리 중 14일내 진단검사 수행

### 4) 격리 면제 대상자

####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능동감시)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결과 나오기 전까지 임시검사(생활)시설에서 대기)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필수 설치한 후 입국 가능
  - ※ 선원의 경우 앱 미설치시 검역확인증 미발급 조치 및 하선 불가
  - ※ 승무원, 선원의 경우 유증상일 경우에만 진단검사 실시

#### < 격리 면제 대상자 >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 ③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 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 ※ 주한미군(A3 비자)의 경우 무증상자는 소속부대에서 인계 및 자체검사, 입국 후 14일간 격리 실시(유증상자는 공항만 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4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1)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

- (검체채취 장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격리시설(실) 등)
- (검체종류) 상기도(비인두와 구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가래) 검체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
  - \* [부록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 참조
-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채취
- (하기도 검체) 객담이 있는 경우 채취(객담 유도 금지)
- 검체 채취 시 개인보호구 착용(보건용마스크(KF94 동급 이상),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 ※ 전신보호복 위에 일회용 긴팔가운 착용 후 검체채취 마다 가운과 장갑만 교체 가능
  - ⇒ 착·탈 소요시간 단축하고 전신보호복 부적정 착용 사례 방지
- (진단검사) 지역거점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 및 제주검역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자체 검사 수행, 그 외 검역소는 가까운 지역거점검사센터에 검사 의뢰[서식 7]
  - 진단검사 기관은 매일 진단검사 현황을 진단검사관리총괄팀, 검역관리팀으로 일일보고(메모보고) 수행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긴급상황실, 검역관리팀으로 우선보고

##### 2) 검역소 격리시설(실) 임시 격리관찰

- 검역소 격리시설(실) 또는 지정 임시격리시설에서 격리관찰 실시
  - ※ 격리시설 운영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에 따름
- 공·항만에서 격리(검사)시설로 이송 시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착용
-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마스크 착용 유지
- 당해 검역소에서 격리시설(실) 부족 상황 발생시에는 인근 검역소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함
  - \* 격리시설 운영 인력 등 검역소간 협력 운영

- 다수의 임시격리 관찰이 필요한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으로 자체 격리시설의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사도),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선박의 경우, 대상자가 경증이고 미하선 시 선내격리 가능

- (검역관) 각 검역소 격리시설(실)로 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 및 검역관리팀으로 격리대상자 발생 메모보고\*

\* 다수의 격리대상자 발생 시 격리대상자 관리대장[서식 8] 또는 일일상황보고로 같음

\*\* 기초역학조사서 파일 첨부

- (격리관찰자) 진단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설 내 임시 격리관찰

\* 격리관찰 중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사·도 담당자(병상배정팀)에게 격리병상 또는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및 이송

\*\* 격리관찰자에게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배부[부록 3]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지역거점검사센터는 의뢰한 검역소에 검사결과 통보(메모, 유선) 후 접촉자관리팀, 검역관리팀에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발지 등), 검사결과(양식은 별도 송부) 보고

\* 시스템 구축 전까지 별도 송부하는 양식으로 보고 수행

- (검사 음성)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해당 안내문 배부, 감시기간 내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해당 앱 설치 확인 후 귀가조치

※ 격리통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입국자의 경우 퇴소 전 발부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 배부,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삭제 후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후 14일 간 시설격리

- (검사 양성)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검역관리팀으로 유선보고 및 관할 사·도 담당자에게 중증도에 따라 병원(중증 이상) 또는 생활치료센터(경증) 배정 요청 및 이송

\* 검역소에서 최초 양성 판정 시 질병관리본부 검사분석팀으로 잔여검체 송부하여 재검사 후 최종 결과판정

- (검사 미결정) 1회 추가 검사 실시 → 미결정 판정 → 24시간 후 1회 추가 검사 실시 → 미결정 판정 →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능동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자체로 결과 통보

## 5 격리병상(생활치료센터) 배정 및 이송

### 1) 격리병상(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①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②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시도 격리병상 배정 담당자(병상배정팀)에게 격리병상 배정 요청, 이송 담당관 연락처 공유

\* 시도 병상배정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

※ 확진자 발생 시 병상배정 체계는 다음의 절차에 따름

#### 〈검역단계 확진자 발생 시 치료병상 배정절차 안내〉

- 중증·고위험군(내·외국인 포함) : 국립중앙의료원

#### ○ 내국인 확진자 :

- (인천 인근\* 거주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 담당자가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배정
  - \* 서울,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시·도 환자 발생과 병상 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원거리 거주자 및 거주지 불분명) 검역소에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 환자관리 담당자 (044-202-3628, 3626)에게 연락하여 안산 등 인천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 검역소 담당자는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사실을 각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자에게 통보

- 외국인 확진자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 환자관리 담당자(044-202-3628, 3626)에게 연락하여 안성 등 인천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생활치료센터 배정 시 지역별 확진자 발생추이, 생활치료센터 입소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산, 파주 외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안내를 할 수 있음

- (시도 담당자) 지역 내 격리병상 배정여부 확인 및 해당시설에 병상(실) 가동준비 요청, 담당자 번호를 검역소에 공유

## 2) 유증상자 이송 및 인계

- (의료기관 이송) 의료기관에 유증상자 이송 및 도착시점 사전 유선알림
  -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이송수단은 검역소 구급차 이용
    - \* 사용불가 시 보건소 구급차, 119 구급차, 민간운영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에서의 협조 요청에 한함) 이용
- (유증상자 인계) 이송요원은 병원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및 유증상자 인계(인계 시 의료진에게 환자의 건강상태를 설명)
- (보고체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이송 등 조치결과 보고(메모보고 등)\*, 관할 시·도에 명단 통보\*
  - \* 기초역학조사서 파일첨부

## 6] 확진환자 신고체계

- (확진환자 신고) 최초인지 검역소는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로 즉시 유선 신고 후 감염병 발생 신고서, 역학조사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Fax 또는 e-mail)
  -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반드시 확진 당일 신고해야 하며,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 [서식 9] 감염병 발생 신고서
- 확진환자를 신고한 검역소는 환자가 이송된 격리병원과 격리병원 및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대상으로 관리 요청 공문 발송
  - \* 공문발송 : 환자발생 사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격리병원에서 환자 신고), 그 외 환자관리 등 요청

### [환자발생신고]

####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유선전화 : 043-719-7979, 7790, 7878, 7789
- E-mail : [kcdceoc@korea.kr](mailto:kcdceoc@korea.kr), FAX : 043-719-9459



< 앞면 >

특별검역 신고서  
Travel Record Declaration

성명 Name(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
국적 Nationality(国籍)	항공기 편명 Flight No.(航空)
여권번호 Passport No.(护照号码)	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到达日期)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실제 거주할 주소를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  
※ Please write current residential address(full address). (请填写在韩实际居住的详细地址。)

휴대전화 Mobile Phone No.(手机号码)
--------------------------------

최근 14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14 days prior to arrival.  
(请填写过去十四天之内停留过的国家。)

출발 국가 및 도시명을 적어 주십시오.(Please list the country and city you departed.)  
请填写出发国家和城市名称。

한국 내 학교명 Name of school in Korea (在韩校名)	한국 내 직장명 Name of company in Korea (在韩所属单位名称)
--	---

본 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information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

若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 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 可被处以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

작성일 2020 년 월 일  
Date (日期) (MM/DD/YYYY)

작성인 (서명 또는 인)  
Completed by (签字)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国立检疫所长 敬启)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복지부 &lt;모바일 자가진단앱&gt; Self Diagnosis Mobile APP</p>  <p>&lt;안드로이드·아이폰용&gt; Google Play/APP Store</p>	<p>행안부 &lt;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gt;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p>  <p>&lt;안드로이드 다운&gt; &lt;안드로이드용&gt; Google Play &lt;아이폰용&gt; APP Store</p>
--	---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 Self Diagnosis Mobile App Installation Instructions

#### < 한국어 >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사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입국 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신 분은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앱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뀐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시는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실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진단 정보를 매일 앱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 ENGLISH >

People with A visas (Diplomat (A-1), Government Official (A-2)) or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install the Self-Diagnosis Mobile App and record their daily health status on the app for 14 days after arrival in Korea. Personal details entered in the "Self Diagnosis App" should coincide with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Travel Record Special Declaration. If there is a change to your personal details, you should update the information in the App. You may receive SMS reminders to submit your daily health status on the app for 14 days after entry to Korea. Please record your health status on the App everyday.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안내

### Guide on the Installation of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 < 한국어 >

입국하신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기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ID : CORONA**

#### < ENGLISH >

All Koreans and long-stay Foreigners should mandatorily install the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abide by the guidelines for self-quarantined persons including submitting their health status on the "Self-Diagnosis App" for a period of 14 days.

If you leave your quarantine area without permission during your home quarantine period or otherwise fail to comply with quarantine guidelines, you will be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on your wrist. If you still refuse to comply, you will be ordered to quarantine at a facility. (\*You may be required to pay for the use of the facility.)

# 검역 확인증

## Health Screening Certificate

성명(Name):

본 검역확인증 소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상자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has completed  
COVID-19 screening measures including temperature  
check and submission of Health Declaration Form.

년            월            일  
(yy)            (mm)            (dd)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 격리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격리 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병원	격리 기간		
	격리 장소	격리 장소	
		주소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격리조치’함을 통지합니다.

격리자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격리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부터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음(\*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5호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소속	긴급상황센터
직위	주무관
성명	감영기·김보경
연락처	043-719-9082, 9302

〈국문〉

##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 격리 주의사항 안내

귀하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안 14일이 되는 날의 24:00까지 격리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ex: 4월 1일 입국하신 분은 4월 15일 24:00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 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실시  
\*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 ✔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유럽발, 미국발 입국자) 또는 입국 후 14일 이내(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 실시
- ✔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 이용하기  
\* 이동 중 다른 창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기
- ✔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 격리자 생활수칙

- ✔ **격리대상자**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 ✔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하기

발행일 2020.05.11.



#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개인 위생수칙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

\*입국하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거주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http://url.kr/9dqRor>

구글 플레이



<http://url.kr/5rntzH>

앱 스토어



<http://url.kr/f7dmWs>

ID : CORONA | 다운로드 : 스토어\*에서 '자가격리자' 검색 \*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아이폰(앱 스토어)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05.11.

## 안 내 문

1. 이곳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입니다.
2. 감염병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감염병이 아니라면 보건교육 후 귀가하게 됩니다.
3. 검역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외부 출입을 금합니다.
4. 식사는 퇴실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5. 검역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 이 격리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입실자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검역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 안전 수칙

1.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관찰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자가격리 전환 인정 사유 >

-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既시행)
-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既시행)
- ③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④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3항·4항 : 시설입소 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기준 삭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자가격리앱 설치 확인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등 안내

- ②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 가능

⇒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신분은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선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에 출국을 희망 시 허용

- 지자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14일 경과 이전에도 출국을 허용하되, 이동 시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선사나 해운대리점 등을 통한 이송 수칙 준수 및 출국 확인 조건을 부과